

【지원자 제출서류 양식】

지 원 서

응모 직위명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	응모번호	※ 기재 불요
--------	---------------	------	---------

사진부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				
		주 소	※ 도로명 주소			
		본적지	※ 후보자에 대해 신원조회시 활용함			
		전 화	[자택]() -	휴대폰		E-mail
			[직장]() -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재지	학 위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교	학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학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학		

병역 사항	병 역	필, 병역특례, 면제 (면제시 사유 :)				
	군 별		계 급		복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자격 및 면허	종 류	취득년월일	어 학	외국어명	점 수	검정기관

□ 경력사항

근 무 처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	
				~	
				~	
				~	
				~	
				~	

□ 관련분야 논문발표 (중요도 순 작성)

구 분	제 목	게재년월	게재기관
논 문			
기 타			

※ 주요사항을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 연구 및 과제수행 주요업적 (중요도, 업무연관성 높은 순 작성)

과제명	주요내용	연구기간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관련분야 국가발전 기여 업적

□ 기타 업적 및 활동 사항

[illegible]☐ 포상실적[illegible]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자 기 소 개 서

※ 지원동기 및 현재까지 달성한 경력 및 업적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분량 : A4용지 4~6매 정도)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회사 운영방침 및 경영혁신 계획을 포함하여 주요사업 계획, 추진전략, 추진일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분량 : A4용지 5매 내외)

기타 지원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 일체

- ☐ 최종학력증명서
- ☐ 경력증명서
- ☐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등 경력·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등

※ 경력사항에 대해 지원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1) 부서단위 책임자임을 증명하는 경력조회(직명, 관리직무, 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예시2)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업무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본인은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있어 인사담당기관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유의사항 등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본인에 관한 정보를 인사담당기관 및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하며, 해당 개인정보 보유 기관장이 원활한 인사검증의 진행을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 자료를 인사담당기관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관리, 보유기간, 유의사항 등	
☞ 수집된 개인정보는 귀하가 지원한 임원 직위에의 인사검증 목적으로만 해당 선임기간(원서제출일~인사발령일)까지 사용되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됩니다.	
☞ 인사검증을 위해 공공기관이 수집·제공 가능한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인사검증을 시행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공기관 임원으로의 임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공공기관 임원 인사담당기관장 귀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	(자필서명)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예 ☐ 아니오
2.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동의	☐ 예 ☐ 아니오
3. 민감정보(범죄경력 등) 처리 동의	☐ 예 ☐ 아니오
4. 개인정보의 제3자(개인정보 보유 기관) 제공 동의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할 경우 '예',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검증을 위해 수집·제공 가능한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자료의 범위	
· 병적자료 병무청	· 재산등록자료 인사혁신처 등 각 관할기관
· 범죄경력 등 자료 경찰청, 검찰청, 국가기록원	·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내역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舊호적 행정안전부, 지자체, 법원	·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내역자료 국민연금공단
· 감사 및 징계전력자료 감사원, 각 관할기관	· 출입국 및 국적자료 법무부
· 부동산 자료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법원	· 정치자금기부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소득 및 납세자료 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 지자체	· 쌀소득직불금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각종 인·허가 자료 해당 인·허가 관청

【별첨 4】감사 후보자 자격요건

감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0조 제②항 제1~5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격요건과 관련된 모든 경력은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소속, 직위, 구체적인 경력 기간 포함)

조항	내용	충족여부 (O/X로 표기)
1호	회계사/변호사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습니까?	
	- 자격과 관련된 업무: 회계, 세무대리 및 부대업무(회계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일반 법률 사무(변호사)	
2호	대학 감사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대학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습니까?	
	- 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포함, 기술대학과 학교 제외 -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 법학, 회계학, 감사행정학, 경영학(재무관리 등) 등 - 조교수 이상: 조교수, 부교수, 교수, 학장, 총장	
3호	공공기관, 주권상장법인, 연구기관의 감사 관련 업무 경력자	
	공공기관, 주권상장법인,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 하였습니까?	
	공공기관 주권상장법인 연구기관에서 부서책임자 이상의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까?	
	- 감사 관련 업무: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 주권상장법인: 유가증권시장(KOSPI), 코스닥(KOSDAQ), 코넥스(KONEX)에서 주권이 거래되는 법인 - 연구기관 : 일정한 연구인력·시설·조직을 갖추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부서책임자 : 정식직제 부서의 장(팀장, 부장 등)으로 인사권과 예산집행권 등의 행사가 가능한 사람	
4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관련 업무 경력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습니까?	
	5급 이상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모두 포함 - 5급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5급,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	
5호	기관의 관장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임명 예정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정당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였습니까?	
	- 해당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분야 : 기관의 설립목적, 정관, 업무 분야를 고려하여 판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모두 포함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 법인: 대한민국 법원에 법인등기가 된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관 -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상기의 표기 및 기재내용에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후보자 감사 자격요건 충족 내역

- 세부 자격요건 판단기준은 “(참고1) 감사 후보자 추천 기준 설명자료” 필수 참조
- 충족하는 자격요건이 여러 개일 경우, 모든 조항 내용 작성 필수
- “감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에 “O”로 표기한 모든 조항 내용 작성 필수

조 항	내 용
3호	공공기관, 주권상장법인,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  (예시) 한국 ○ ○ 공사 기획조정실장(12.12~13.12), 한국 ○ ○ 공사 경영기획부 파트장 등(07.7~09.12)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시행령) 상기 기관에서 부서책임자 이상의 직위에 근무한 경력  (예시) 한국 ○ ○ 공사 기금사업본부장(15.3~18.8) - 부서책임자: 정식직제 부서의 장(팀장, 부장 등)으로 인사권과 예산집행권 등의 행사가 가능한 사람
4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 공무원  (예시) ○ ○ 부 감사관실(91.3~04.2)
	(시행령) 5급 이상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예시) ○ ○ 부 행정사무관 등(01.6~07.7)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0조 제②항 제1~5호 요건

조 항	내 용
1호	회계사/변호사가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 자격과 관련된 업무: 회계, 세무대리 및 부대업무(회계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일반 법률 사무(변호사)
2호	대학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 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포함, 기술대학과 학교 제외 -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 법학, 회계학, 감사행정학, 경영학(재무관리 등) 등 - 조교수 이상: 조교수, 부교수, 교수, 학장, 총장
3호	공공기관, 주권상장법인,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
	- 감사 관련 업무: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 주권상장법인: 유가증권시장(KOSPI), 코스닥(KOSDAQ), 코넥스(KONEX)에서 주권이 거래되는 법인 - 연구기관 : 일정한 연구인력·시설·조직을 갖추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시행령) 상기 기관에서 부서책임자 이상의 직위에 근무한 경력
4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 공무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모두 포함
	(시행령) 5급 이상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5호	해당 기관의 관장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시행령 모두 충족)
	(시행령) 임명 예정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 해당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분야: 기관의 설립목적, 정관, 업무 분야를 고려하여 판단
5호	(시행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정당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모두 포함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 법인: 대한민국 법원에 법인등기가 된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관 -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별첨 5】결격사유 등 부존재 확인서

결격사유 등 부존재 확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 결격사유 및 취업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자별 결격사유 등 유무에 대하여 지원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결격사유 유무 ("v"체크)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ex,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 없음	☐ 있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ex, 공공기관장으로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사회 의결 거쳐 해임된 사람)	☐ 없음	☐ 있음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없음	☐ 있음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없음	☐ 있음

본인은 상기의 표기 및 기재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미기재, 허위기재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후보자 추천 또는 임용의 취소 등 모든 불이익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며,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